

전략기획위원회규정

2018.08.31. 제정 2019.10.01. 일부개정 2020.03.01. 일부개정 2020.10.01. 일부개정
 2020.11.01. 일부개정 2021.06.01. 일부개정 2023.09.01. 일부개정

<미래전략팀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주요 정책과제 등을 다루기 위한 전략기획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2020.1.3)

1.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대학의 특성화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(삭제 2020.1.3.)
4. (삭제 2020.1.3.)
5. 기타 대학 발전을 위한 기획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
제2조의 1(회의) ① 위원장은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20.1.3., 2020.11.1.)

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분하고,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 (개정 2021.6.1., 2023.9.1.)

③ 기획처장, 교무처장, RISE전략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9.10.1., 2020.3.1., 2020.10.01., 2021.6.1., 2023.9.1.)

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제4조(임기)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명시하여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.

제5조(비밀유지의무) 위원은 학교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에 관해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,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